퇴직연금 감독규정 변경 예고

최 원 선임연구원

- 금융위는 2012년 7월 26일 개정 시행된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· 규칙」에 대한 후속 조치로 「퇴직연금 감독규정」변경을 예고함.
  - 시행령에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규정방식을 「포괄식」에서 「열거식」으로 개정함에 따라 발행 · 표지어음, ELS[1] 등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운용방법을 감독규정에서 명시함.
  - 시행규칙 개정으로 DC · IRP형 퇴직연금의 주식형 · 혼합형 펀드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DC · IRP형 퇴직연금의 펀드투자 한도를 적립금의 40%까지로 규정함.

- 또한, 이번 감독규정 변경에는 과당경쟁 방지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2012년 5월 발표된 '퇴직연금 감독방향'의 세부 내용 구체화 방안도 포함됨.
  - 가입자 수급권이 사업자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간 거래한도를 사업자 신탁계정의 70%에서 50%로 하향조정함.[2]
  - 사업자가 자기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을 분기마다 공시하도록 하여 계열사 간 거래 규제를 강화함.
  - 가입자의 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사업자가 자신 또는 계열사 상품만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함.
  - 사업자의 불건전 모집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점검을 의무화하며, '대출조건부 계약체결 요구행위의 정의'조항을 신설하여 금지대상을 명확히 규정함.

- 한편, 금융위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감독규정 변경 조치도 제시함.

---

1) ELS의 경우 원리금보장 · 계정분리 등 일정요건 충족 시 허용함.
2) 단, 전산인프라가 활성화된 이후인 2013년 2분기에 시행하기로 함.

- 사업자 등록을 위한 인적 요건 강화를 위하여 운용관리 및 전산 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상향조정하고, 가입자 교육인력 2명을 신설함.
- 사업자 준법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도규제를 위반한 운용지시에 대해서는 거절을 의무화함.

(퇴직연금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, 금융위, 7/31)